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(COVID)-19 검역대응 지침(제14-2판)

2022. 12. 21.

중앙방역대책본부
해외출입국관리팀

본 대응 지침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국내 유입에 따라 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지침」을 근거로 국립검역소 검역대응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. 향후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및 발생 상황에 따라 보완·변경될 수 있습니다.

구분		주요 수정사항							
공통	개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생활치료센터 운영 중단 반영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기존</th> <th>변경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(유증상자 양성 시) 자택 또는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 이송</td> <td>(유증상자 양성 시) 자택 또는 병원 또는 재택격리 입소시설* * 국내거소지 불분명한 무증상·경증 외국인 확진자</td> </tr> <tr> <td>(유증상자 양성 시) 자택격리, 병원, 생활치료센터 이송 선박 내 격리</td> <td>(유증상자 양성 시) 자택격리, 병원, 선박 내 격리, 재택격리 입소시설* * 국내거소지 불분명한 무증상·경증 외국인 확진자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	기존	변경	(유증상자 양성 시) 자택 또는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 이송	(유증상자 양성 시) 자택 또는 병원 또는 재택격리 입소시설* * 국내거소지 불분명한 무증상·경증 외국인 확진자	(유증상자 양성 시) 자택격리, 병원, 생활치료센터 이송 선박 내 격리	(유증상자 양성 시) 자택격리, 병원, 선박 내 격리, 재택격리 입소시설* * 국내거소지 불분명한 무증상·경증 외국인 확진자
		기존	변경						
	(유증상자 양성 시) 자택 또는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 이송	(유증상자 양성 시) 자택 또는 병원 또는 재택격리 입소시설* * 국내거소지 불분명한 무증상·경증 외국인 확진자							
(유증상자 양성 시) 자택격리, 병원, 생활치료센터 이송 선박 내 격리	(유증상자 양성 시) 자택격리, 병원, 선박 내 격리, 재택격리 입소시설* * 국내거소지 불분명한 무증상·경증 외국인 확진자								
개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일일상황 보고 삭제 - “검역소는 일일상황을 중앙방역대책본부 해외출입국관리팀으로 보고” 삭제 								
개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유증상자 검역 조사·조치 - (기존) ‘감염병자동통보지원프로그램’을 이용하여 확진자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발생 통보 → (변경) ‘감염병자동통보지원프로그램’ 혹은 공문을 통해 확진자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발생 통보 * (중증 및 고위험군 확진자) 이송한 의료기관 소재지 관할 보건소로 통보, (무증상·경증 확진자) 지자체 마련 재택 격리 입소시설 소재지 관할 보건소 통보 								
항만	개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재검출자 증명 책임 - 증명자료 미지참 또는 본인확인 불가능한 서류 등으로 발생하는 격리치료 등은 입국자 본인의 책임 							
	개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검역 단계 확진자 관리 방안 개정 - (기존) 내·외국인 확진자 시·도 연락담당관을 통해 병상 배정 요청 → (변경) 자가용 및 방역 택시를 이용하여 귀가 후 재택 치료 권고 * 국내 거소지 불분명한 외국인인 경우, 지자체 마련 재택격리 입소시설에 격리 							

목 차

I. 대응원칙	1
II. 사례정의	2
III. 공항 검역대응 절차	4
1. 공항 검역대응 주요사항 안내	4
2. 검역대응 흐름도	4
3. 입국검역	5
4. 유증상자 검역조사·조치	6
5. 무증상자 검역조사·조치	9
IV. 항만 검역대응 절차	10
1. 항만 검역대응 주요사항 안내 및 용어정의	10
2. 검역대응 흐름도	11
3. 검역조사	12
4. 유증상자 검역조사·조치	14
5. 무증상자 검역조사·조치	17
V. 진단검사 및 격리조치	18
VI. 확진환자 발생 시 조치	22
VII. 접촉자 관리	26
VIII. 기타 행정사항	27

서식 및 부록

«서식»

1. 건강상태질문서	30
2. 특별입국절차 입국불허 요청서	31
3. 특별검역신고서 및 앱 설치 안내	32
4. <삭제>	34
4-1. <삭제>	35
5. 기초역학조사서	36
6. 격리통지서	37
7. 입항선박 검역조사 방법 결정을 위한 점검사항	38
8. 검사의뢰 관리대장	39
9. 검체 시험의뢰서 서식	40
10. 격리대상자 관리대장	41
11.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검사확인서	42
12.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접촉자 조사 양식	43

«부록»

1.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인을 위한 실험실 검사 관리	44
2. 코로나19 대응 상황별 개인보호구 권장 범위	48
3. 격리시설 내 임시격리 대상자 안내문	57
4. 항만 입항 군용(軍用) 운송수단 검역절차	60

I. 대응원칙

- (법적근거) 코로나19는 '19년 12월 발생 이후 현재까지 전 세계적인 대유행이 이어지고 있으며, 오미크론 변이 이후 방역 상황 변화에 따라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‘제2급감염병’ 으로 대응함(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제1호 가목, 질병청 고시, '22.4.25.)
 - 「검역법」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국내유입·확산 방지를 위해 적용
- (대응방향) 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지침」(지자체용)에 따라 효율적인 검역 절차 마련
 - 코로나19에 대해 현재까지 알려진 정보를 근거로 작성하였으며,
 - 향후 발생 상황과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사례정의, 잠복기, 대응절차 등 변경 예정
 -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공·항만 검역의 경우, 본 지침을 기본으로 따르되, 검역현장 상황을 반영하여 세부절차 등을 추가하여 운영할 수 있음
 - 코로나19와 관련한 기타 세부사항 등은 ‘코로나19 검역대응 FAQ’ 참고

II. 사례정의 등

본 사례정의는 국내 유입된 코로나19의 위기경보 수준 '심각단계' 상황에 적용하며, 「코로나바이러스19 대응 지침(지자체용)」 변경에 따라 사례정의가 일부 변경될 수 있음

1. 사례정의

- ◆ 진단을 위한 검사 기준 : 코로나19 유전자(PCR) 검출, 바이러스 분리
 - 신속항원검사(전문가용) 또는 응급용 선별검사(긴급사용승인 제품) 결과 양성*
 - * '22. 3. 14. ~ 별도 안내시까지
- ◆ 주요 임상증상 : 발열(37.5℃ 이상), 기침, 호흡곤란, 오한, 근육통, 두통, 인후통, 후각·미각소실 또는 폐렴 등

○ 확진환자

- 코로나19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이 확인된 사람
- 코로나19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신속항원검사(전문가용) 또는 응급용 선별검사(긴급사용승인 제품) 결과 양성으로 확인되어 의사가 진단한 사람*

- ▶ '22. 3. 14. ~ 별도 안내시까지
- ▶ 증상이 있고, 신속항원검사(전문가용) 양성 시 PCR 검사는 미시행 원칙, 다만 의사 판단 하에 추가 PCR 진행 가능
- ※ 주의: 신속항원검사(전문가용), 응급용 선별검사(긴급사용승인 제품) 결과 양성이라도 추가 PCR 검사를 의뢰하는 경우 확진환자로 신고하지 않고 PCR 검사 양성시 신고

※ 검역단계 사례분류는 사례정의를 참고하여 역학조사관 또는 공중보건과의 판단할 수 있음

2. 감염병의심자 정의(감염병예방법 제2조 제15의2호, 2020.3.4. 시행)

○ 감염병의심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의미

- ① 감염병환자,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(이하 “감염병환자등”)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
- ② 「검역법」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람으로서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
- ③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

3. 장기체류외국인·단기체류외국인 분류 정의

○ (장기체류외국인) 「출입국관리법」 제10조의2에 따른 장기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함

* A-1~3, D-1~10, E-1~10, F-1~4, F-6, H-1~2, G-1

** 유학, 연수, 투자, 주재, 결혼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체류기간의 상한 범위에서 거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

○ (단기체류외국인) 「출입국관리법」 제10조의2에 따른 단기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함

* B-1, B-2, C-1, C-3, C-4

** 관광, 방문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90일 이하의 기간 동안 머물 수 있는 체류자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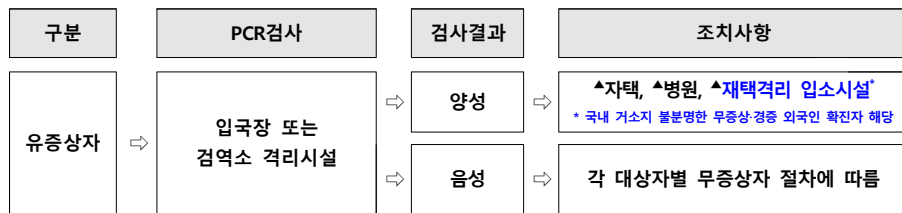
III. 공항 검역대응 절차

1. 공항 검역대응 주요사항 안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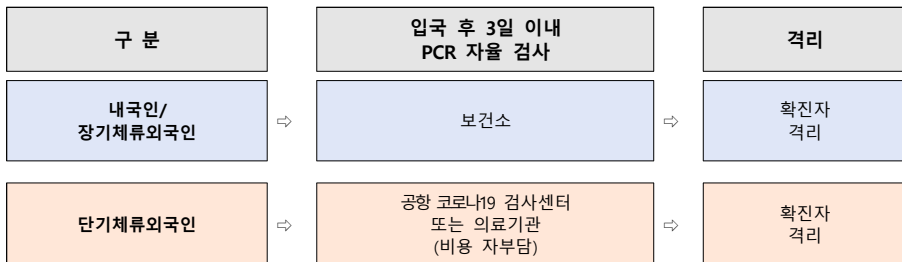
- ◆ **입국 전 음성확인서 요구 중단('22.9.3.~)**
 - 기내 탑승객은 마스크 반드시 착용하는 등 방역지침 준수
 - 기내 코로나19 유증상자 발견 시 검역소에 통보
 - 본인 및 다른 승객의 안전을 위해 증상이 있어 해외 현지에서 코로나19 검사 후 양성 판정 시 현지에서 격리·치료하는 것을 권고함
- ◆ **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(Q-CODE) 운영 안내**
 - Q-CODE시스템 이용자는 QR코드를 제시하여 건강상태 확인(별도 제출서류 없음)
 - ※ 이용대상 및 이용방법 등 세부사항은 <https://cov19ent.kdca.go.kr> 에서 확인 가능
- ◆ **해외입국자 대상 의무격리 전면 해제('22.6.8.~)**
 - 예방접종력 또는 비자종류 등 구분없이 격리 미실시(확진자만 격리)
- ◆ **추후 신종변이 발생 또는 국내외 상황 변화 시 조정 가능**

2. 검역대응 흐름도

□ 유증상자



□ 무증상자



3. 입국검역

- ◆ 대한민국 입국자는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(Q-CODE)을 통해 검역정보 입력 후, 입국 시 검역관에게 시스템에서 발급 받은 QR코드*를 제시하여 건강상태 확인
 - * 발급받은 QR코드는 인쇄하거나 휴대전화 사진 등으로 제시
- ◆ 입국 후 1일차 PCR 검사 의무를 중단하고, 3일 이내 자율적으로 PCR 검사 가능(10.1.~)
- ◆ 큐코드 누리집 상 PCR 검사 등록 의무 중단(10.1.~)
- ◆ 추후 신종변이 발생 또는 국내외 상황 변화 시 조정 가능

가. 입국검역 개요

- (대상) 모든 해외입국자(내국인 포함)
- (구성) 입국자 발열 여부(발열감시카메라, 고막채운계 등), 건강상태 질문서 통한 건강상태 정보 확인
 - * 마스크 미착용자는 마스크를 제공하여 착용하도록 조치

① (검역정보 확인)

- (Q-CODE 이용자) 발급받은 QR코드를 제시하고, 검역관은 QR코드를 스캔하여 입국자 정보 확인
- (Q-CODE 미이용자) 입국장에서 검역관의 안내에 따라 건강상태정보를 Q-CODE에 입력하고, 스캔하여 입국자 건강상태 정보 확인
 - * Q-CODE 이용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 서류검역 실시

○ (입국 후 검사) 검사희망자*는 입국 후 3일 이내 PCR 자율 검사 가능

- * (내국인 또는 장기체류 외국인)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 (단기체류 외국인) 공항 코로나19검사센터 또는 숙소 인근 의료기관(비용 본인부담)

※ 여권을 확인하여 내·외국인을 먼저 구분하고, 입국심사 확인증(출입국 발급), 외국인 등록증, 국내거소신고증, 영주증 등을 확인하여 장기체류 외국인인지 여부 구분(본인 입증 책임)

◆ 해외입국자는 PCR검사 우선순위 대상자임. 입국 후 PCR검사를 받기 위해 관할 보건소 방문 시, 항공권, 입국심사 확인증 등 해외입국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소지한 후 방문

4. 유증상자 검역조사·조치

- (유증상자 기준) 입국일 기준 21일 이내* 발열(37.5℃ 이상) 또는 기침,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있는 입국자(모든 해외입국자 대상)
 - * 건강상태질문서에 따라 입국일 기준 21일 이내로 설정
- (대상)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 유증상자로 분류
 1. 항공기 보건상태신고서를 통해 신고된 감염병환자등 (기내 발열, 호흡기 증상 등 감염병 의심자 포함)
 2. 해외감염병신고센터를 통해 신고된 감염병환자등
 3. 입국장에서의 발열체크, 건강상태질문서(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을 통한 확인) 등을 통해 확인된 감염병환자등
 - * 발열 확인 시 추가로 고막체온 측정하고, 해열제 복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감안하여 검역관이 유증상자로 분류 가능
 - ** 건강상태질문서 등 입국자 건강상태 확인하면서 검역정보 확인 병행

※ 건강상태질문서 작성을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할 경우 「검역법」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

○ (기내 유증상자 발생 시 조치)

- * 기내 승객 및 승무원은 마스크 반드시 착용
- 기내 유증상자 발견 시 「검역법」 상 항공기 보건상태신고서 상에 적시*하여 신고
 - * 항공기 보건상태 신고 별지 명세표에 유증상자 작성
- 유증상자를 우선 하기하여 검역대에 인계, 검역소는 보건교육, 임시 격리, 검체채취 등 조치 실시

- (유증상자 검역조사) 증상자 분류 후 검역소 격리관찰시설(실) 등에서 임시격리 및 검체채취
 - * 유증상자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
- 유증상자 분류 후 검역소 격리관찰시설(실) 등으로 이송
- 검역소 격리관찰시설(실)에서 임시격리 및 검체채취 실시
 - * 관할 질병대응센터로 PCR검사 의뢰(필요시 수탁기관 활용)
- 상태가 중증이상인 경우에는 검역소 격리시설에서 대기 후 국립중앙의료원 등 의료기관 이송 조치
 - * 검역소 소재지 119 신고 고려
- 상태가 경증인 경우에는 검역소 검체채취 후 자차 등 이용하여 자가 또는 숙소 대기 가능함
 - * 이동 시, 마스크 착용 철저히 및 검사 결과 안내를 위한 연락처 확인 철저

[(참고) 중증도 분류기준]

* 코로나19 지자체 대응지침 참고

단계	정의	현행 중증도 분류
1	일상생활 지장 없음(no limit of activity)	경증이하
2	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으나 산소치료 불필요 (limit of activity but No O2)	
3	비관산소치료(O2 with nasal prong)	중등중
4	산소마스크(O2 with facial mask)	
5	비침습인공호흡기/고유량산소요법 (non-invasive ventilation/high flow O2)	위중증
6	침습인공호흡기(invasive ventilation)	
7	다기관손상/에크모/CRRT (multi-organ failure/ECMO/CRRT)	
8	사망(death)	사망

○ (유증상자 검역조사 시 역할)

- (검역관) 역학조사관 또는 공중보건외(타부처 파견 의사 포함)와 상의 후 별도의 격리공간(실)로 함께 이동
 - * 검역관은 KF94 등급 이상의 호흡기보호구와 장갑 착용(필요시 안면보호구, 가운, 레벨D 등 착용)

※ 역학조사관 또는 공중보건외(타부처 파견 의사 포함)가 없거나 대응이 어려운(확진자 다수 발생 등) 검역소의 경우, 검역관이 기초역학조사서 작성 후 질병대응센터에 역학조사 지원 요청

- (역학조사관 또는 공중보건외) 기초역학조사[서식 5] 후 PCR검사 실시
 - 독립된 공간(검역조사실, 유증상자 개방형 선별진료소 등)에서 검체채취 후 PCR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격리관찰시설(실) 등에서 임시격리 수행
 - * 역학조사 시 긴팔가운을 포함한 4종(KF94 등급 이상의 호흡기 보호구, 장갑, 방수성 긴팔가운,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) 또는 전신보호복(레벨D) 착용

○ 검사 결과에 따른 조치

- (양성) ▲자택, ▲병원 또는 ▲재택격리 입소시설로 이동 안내
 - * 확진자 발생에 따른 세부 조치사항은 VI.확진환자 발생 시 조치 참고
- (음성) 대상자별 무증상자 절차에 따름
 - * (미국 외교관(A1)·관용여권(A2)·주한미군(A3)) 소속부대에서 인계 후 PCR 검사 실시, 주한미군(A3)은 자체관리

5. 무증상자 검역조사·조치

- (검역조사) 발열체크 및 건강상태질문서 징구 통한 증상 분류
- (무증상자 조치) 희망자에 한해 입국 후 3일 이내 PCR 자율 검사

※ 여권을 확인하여 내·외국인을 먼저 구분하고, 입국심사 확인증(출입국 발급), 외국인 등록증, 국내거소신고증, 영주증 등을 확인하여 장기체류 외국인 인지 여부 구분(본인 입증 책임)

① (내국인, 장기체류외국인)

- 거주지 관할보건소에서 입국 후 3일 이내 PCR 자율 검사

※ SOFA협정 적용자로 주한미군(A3)과 그 관련자는 미군부대에서 인계 후 자체 관리

② (단기체류외국인)

- 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 또는 숙소 의료기관에서 입국 후 3일 이내 PCR 자율 검사(비용 본인부담)

IV. 항만 검역대응 절차

1. 항만 검역대응 주요사항 안내 및 용어정의

- ◆ 해외입국자 대상 의무격리 전면 해제('22.6.8.~)
 - 예방접종력 또는 비자종류 등 구분없이 격리 미 실시(확진자만 격리)
- ◆ 입항 전 음성확인서 요구 중단('22.9.3.~)
 - 여객선 선내 탑승객은 마스크 반드시 착용하는 등 방역지침 준수 및 유증상자 발견 시 검역소에 통보
 - 본인 및 다른 승객의 안전을 위해 증상이 있어 해외 현지에서 코로나19 검사 후 양성 판정 시 현지에서 7일간 격리·치료하는 것을 권고함
- ◆ 입국 후 1일차 PCR 검사 의무를 중단하고, 3일 이내 자율적으로 PCR 검사 가능(10.1.~)
- ◆ 추후 신종변이 발생 또는 국내외 상황 변화 시 조정 가능

○ 하선 유형에 따른 항만 입항 인원 구분

- (입국자) 하선자 중 선원 교대 등의 사유로 「출입국관리법」 제12조에 따라 출입국의 입국심사를 받는 내·외국인
- (재승선 내국인) 하선자 중 입국심사를 받지 않고 외출하였다가 선박으로 다시 돌아가는 내국인
- (상륙허가자) 하선자 중 「출입국관리법」 제14조 및 제17조에 따라 출입국에 상륙 허가를 신청한 외국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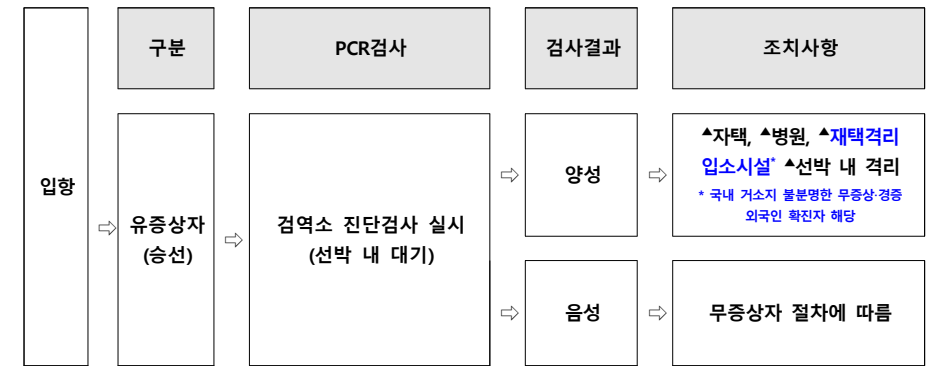
○ 선박 탑승 유형에 따른 항만 입항 인원 구분

- (선원)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된 사람으로서 「선원법」에 따라 공인된 명부에 등록된 사람 또는 선원수첩 등 선원신분증명서를 소지하고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온 인원 (전선 또는 편승 인원을 포함)
- (여객) 선원수첩 등 선원신분증명서를 소지하지 않으면서 근로 제공 외의 목적으로 「해운법」 상 해상여객운송사업 해당 선박에 탑승하여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온 인원
- (기타탑승자) 선원과 여객을 제외한 인원

※ 기존 검역 대응 지침 상 '승객'으로 표현된 인원을 '기타탑승자'로 적용함

2. 항만 검역대응 흐름도

□ 유증상자



※ 유증상자 검사결과 '음성' 확인 후 입국절차(하선자) 진행

□ 무증상자



3. 검역조사

가. 승선·비승선 검역

- (승선검역) 코로나19의 전파 위험이 큰 경우 검역관이 승선하여 선박 내 전 인원의 발열체크 및 건강상태질문서 확인 등의 검역조사 실시

※ 검역관은 승선시 마스크 및 장갑 착용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하고, 마스크 미착용자를 대상으로 마스크 제공하여 착용하도록 안내

◆ 승선검역 대상[서식 7]

- ① 검역감염병 환자들이 발생했거나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또는 사망자가 발생한 선박
- ② 입항 전 14일 이내 선원교대 등으로 승선자가 있는 선박
- ③ 선박위생관리(면제)증명서(유효기간 만료 포함) 미소지 선박
(이전 출항지의 검역소장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)
- ④ 기타 승선검역이 필요하다고 검역소장이 인정하는 선박

- (비승선 검역) 승선검역 외의 경우, 서류심사 또는 「검역법 시행규칙」 제3조에 따른 조사생략 선박의 경우 전산을 통한 검역조사 실시

* 군용 운송수단의 경우 부록6 절차에 따름(관계부처 간 별도협의)

- 검역관은 서류심사로 신청한 선박 중 승선검역 대상 선박으로 판정시 ‘불합격’ 처리 후 승선검역으로 전환하여 검역조사 실시

나. 하선절차

- ① (검역정보 확인) 개인별 건강상태질문서를 징구하여 인적사항 확인하는 것을 원칙

* 선사나 해운대리점을 통해 건강상태질문서 등을 제출하는 것도 가능

- ② (증상분류) 건강상태질문서 및 발열체크 결과 증상 분류

- ③ (입국 후 검사) 검사희망자*는 입국 후 3일 이내 PCR 자율 검사 가능

* (내국인 또는 장기체류 외국인)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

(단기체류 외국인) 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 또는 숙소 인근 의료기관(비용 본인부담)

※ 여권을 확인하여 내·외국인을 먼저 구분하고, 입국심사 확인증(출입국 발급), 외국인 등록증, 국내거소신고증, 영주증 등을 확인하여 장기체류 외국인인지 여부 구분(본인 입증 책임)

- ◆ 해외입항자(항만)는 PCR검사 우선순위 대상자임. 입국 후 PCR검사를 받기 위해 관할 보건소 방문 시, 승·하선 공인 서류 또는 하선일자가 적힌 선원명부 등 해외입국자(항만)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소지한 후 방문

4. 유증상자 검역조사·조치

- (유증상자 기준) 발열(37.5℃ 이상) 또는 기침,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있는 입국자(모든 하선자 대상)
 - (대상)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 유증상자로 분류
 - 가. 선박 보건상태신고서를 통해 신고된 감염병환자등 (선내 발열, 호흡기 증상 등 감염병 의심자 포함)
 - 나. 해외감염병신고센터를 통해 신고된 감염병환자등
 - 다. 입국장에서의 발열체크, 건강상태질문서 등을 통해 확인된 감염병환자등
 - * 발열 확인 시 추가로 고막체온 측정하고, 해열제 복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감안하여 검역관이 유증상자로 분류 가능
 - ** 건강상태질문서 등 입국자 건강상태 확인하면서 검역정보 확인 병행
 - (선내 유증상자 발생 시 조치) 선내 유증상자 발견 시 「검역법」 상 선박 보건상태신고서 상에 적시*하여 신고
 - * 선박 보건상태 신고서 후면에 기재
 - (여객선) 유증상자를 우선 하선하여 검역소에 인계, 검역소는 보건 교육, 임시격리 및 검체채취 등 조치
 - (유증상자 검역조사) 증상 분류 후 임시 격리 및 검체채취 실시
 - 유증상자 분류 후 독립된 공간에서 검체채취
 - * 유증상자는 검역조사 중 마스크 상시 착용
 - 상태가 경중인 경우에는 검역소 검체채취 후 자차 등 이용하여 자가 또는 숙소 대기 가능함
 - * 이동 시, 마스크 착용 철저 및 검사 결과 안내를 위한 연락처 확인 철저
- ※ 관할 질병대응센터로 PCR검사 의뢰(필요시 수탁기관 활용)
- 상태가 중증이상인 경우에는 의료기관 진료 후 의사 판단에 따라 입원 가능(필요시, 관할 시도 연락담당관에게 연락하여 병상 배정 요청)

[(참고) 중증도 분류기준]

* 코로나19 지자체 대응지침 참고

단계	정의	현행 중증도 분류
1	일상생활 지장 없음(no limit of activity)	경증이하
2	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으나 산소치료 불필요 (limit of activity but No O2)	
3	비관산소치료(O2 with nasal prong)	중등중
4	산소마스크(O2 with facial mask)	
5	비침습인공호흡기/고유량산소요법 (non-invasive ventilation/high flow O2)	위중중
6	침습인공호흡기(invasive ventilation)	
7	다기관손상/에크모/CRRT (multi-organ failure/ECMO/CRRT)	
8	사망(death)	사망

○ (유증상자 검역조사 시 역할)

- (검역관) 역학조사관 또는 공중보건(타부처 파견 의사 포함)와 상의 후 별도의 격리공간(실)로 함께 이동

* 검역관은 KF94 등급 이상의 호흡기보호구와 장갑 착용(필요시 안면보호구, 가운, 레벨D 등 착용)

※ 역학조사관 또는 공중보건(타부처 파견 의사 포함)가 없거나 대응이 어려운(확진자 다수 발생 등) 검역소의 경우, 검역관이 역학조사서 작성 후 질병대응센터에 역학조사 지원 요청

- (역학조사관 또는 공중보건의) 기초역학조사[서식 5] 후 PCR검사 실시

* 역학조사 시 긴팔가운을 포함한 4종(KF94 등급 이상의 호흡기 보호구, 장갑, 방수성 긴팔가운,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) 또는 전신보호복(레벨D) 착용

○ 검사 결과에 따른 조치

- (양성) ▲주택, ▲병원, ▲재택격리 입소시설 또는 ▲해당 선박 내 격리

* 확진자 발생에 따른 세부 조치사항은 VI.확진환자 발생 시 조치 참고

- (음성) 대상자별 무증상자 절차에 따름

○ (하역작업 등) 유증상자와 접촉하지 않도록 조치 후 작업 및 선원 교대 등 가능

5. 무증상자 검역조사·조치

○ (검역조사) 발열체크및 건강상태질문서 징구 통한 증상 분류

○ (무증상자 검역조치) 하선자* 입국 후 3일 이내 PCR 자율 검사

※ 여권을 확인하여 내·외국인을 먼저 구분하고, 입국심사 확인증(출입국 발급), 외국인 등록증, 국내거소신고증, 영주증 등을 확인하여 장기체류 외국인인지 여부 구분 가능(본인 입증 책임)

○ (무증상자 검사장소) 하선유형에 따라 검사장소가 다름

① (내국인, 장기체류외국인 입국자·재승선내국인)

- 거주지 관할보건소에서 입국 후 3일 이내 PCR 자율 검사

② (단기체류외국인 입국자·상륙허가자)

- 숙소 인근 의료기관에서 입국 후 3일 이내 PCR 자율 검사(비용 본인부담)

V. 진단검사 및 격리조치

- ▷ 기존 검역소에서 수행하던 진단검사는 질병대응센터에서 수행
 - 검역소에서 검체채취 후 질병대응센터로 검사 의뢰(필요시 수탁기관 활용)
 - 단, 센터 내 신규 검사실 구축시까지 기존 검사실에서 검사업무 수행
 - * 기타 행정사항은 검역소-센터 간 업무협의를 통해 수행
- ▷ 해외입국자는 입국 후 3일 이내 PCR 자율 검사

가. 검체채취 및 진단검사 실시

- (검체채취 장소) 검체 채취가 가능한 독립된 공간
 - * 검역조사실, 격리시설(실), 선내 등
- (검체종류) 상기도 검체(권장), 기침이나 가래가 있는 경우 하기도 검체* 경증인 경우 상기도 검체만 채취
 - * [부록 2] '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인을 위한 실험실 검사관리' 참조
 - (상기도 검체) 비인두도말물 또는 구인두도말물 채취
 - * 비인두도말물을 우선적으로 채취하되, 비인두도말물 채취가 어려운 경우 구인두도말물 채취
 - (하기도 검체) 가래가 있는 경우 채취(가래 유도 금지)
- (개인보호구) 검체 채취 시 긴팔가운을 포함한 4중(KF94 동급 이상의 호흡기 보호구, 장갑, 방수성 긴팔가운,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) 또는 전신보호복(레벨 D) 착용[부록 3]

※ 검체 채취시마다 장갑을 교체하고 알콜로 소독

- (검사의뢰) 검역소는 관할 질병대응센터로 진단검사 의뢰(공문 등)
 - * 검체 의뢰시 검사의뢰 관리대장[서식 8]을 작성하여 질병대응센터로 송부
 - ** 관할 질병대응센터에서 해외출입국관리팀(메모보고)으로 실적 송부

- (검사수행) 질병대응센터에서 진단검사 수행(필요시 수탁기관 활용)[서식 9]
 - * 질병대응센터 신규 검사실 구축시까지 기존 검사실에서 검사업무 수행
- (결과회신) 질병대응센터는 검역소로 진단검사 결과 회신(공문 등)
- (양성 확인) 검사결과 '양성'인 경우, 질병대응센터에서 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로 보고(유선보고 등)
 - * 단, 검역소에서 수탁기관에 진단검사를 의뢰한 경우에는, 양성 확인 시 검역소에서 질병관리청(종합상황실)으로 보고
 - (양성보고) 양성인 경우 24시간 이내 보고해야 하며, 당일 보고전에 한하여 질병관리청(종합상황실)에서 확진환자 번호 부여
 - (최초 양성 판정시) 질병대응센터 신규 검사실 구축 후 최초 양성 판정 시 방대본 진단총괄팀으로 잔여검체 송부하여 재검사 후 최종결과 판정

나. 검역소 격리관찰시설(실) 임시 격리

※ 유증상자 등 감염병의심자 중 검역소 격리관찰시설(실)에서 임시격리 시 적용하며, 격리시설 운영은 「국립검역소 격리시설(실) 관리 지침」에 따름

○ (격리 장소) 검역소 격리관찰시설(실) 및 지정 임시격리시설

- * 선박 하선자의 경우 PCR 검사결과 확인시까지 선내에서 대기하며, 선사나 해운대리점 관리자의 인솔하에 마스크 등 착용 후 이동
- 임시격리 장소로 이송 시 검역관은 KF94 등급의 호흡기보호구 및 장갑을 착용하고 이송 대상자는 이송 시 마스크 착용 유지함
- 해당 검역소에서 격리관찰시설(실)이 부족할 경우 인근 검역소 시설 공동 이용(격리시설 운영 인력 등 검역소간 협력 운영)
- 격리대상자 다수 발생으로 자체 격리시설 수용한계를 벗어나는 경우를 대비하여 지자체, 의료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업체계 구축

○ (검역관) 각 검역소 임시격리 장소로 대상자와 함께 이동 및 해외

- 출입국관리팀으로 격리대상자 발생 메모보고(기초역학조사서 파일 첨부)
 - * 다수의 격리대상자 발생 시 격리대상자 관리대장서식 10 또는 일일상황보고로 같음
- (격리관찰자) PCR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시설 내 임시 격리 조치
 - * 역학조사관 또는 공중보건(타부처 파견 의사 포함)가 격리관찰 대상자의 상태가 악화되어 격리병상(의료기관)으로 이송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격리병상 배정요청 후 이송
 - ** 격리대상자에게 임시격리 대상자 안내문 배부[부록 4]

다. 진단검사 결과에 따른 조치

○ (검사결과별 세부사항) 검역관은 대상자에게 검사결과 안내 등 보건교육 실시

- (검사 음성) 대상자별 무증상자 절차에 따름(입국후 및 하선전 PCR 검사는 완료한 것으로 봄)
- (검사 양성) 최초 인지한 검역소는 재택치료* 안내 또는 관찰 시·도 담당자에게 병원(중증 이상) 이송**(격리해제 등 관리는 이송한 시설규정에 따름)
 - * 재택치료는 국내에 거주지(또는 보건소에서 인정하는 장소)가 있는 경우에 한함
 - ** 세부적인 확진자 이송 및 격리 절차는 VI. 확진환자 발생 시 조치에 따름
- (검사 미결정) 추가검사 실시하며, 미결정 2회 시 역학조사관(또는 공중보건의) 또는 검사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격리여부 결정
 - * 사례정의 및 판정 등은 VIII. 기타 행정사항 → 재검출자 사례 참고

○ (검사결과 보고) 질병대응센터에서 진단총괄팀, 해외출입국관리팀에

- 인적사항(성명, 여권번호, 생년월일, 출발지 등) 및 결과 보고
 - * 시스템 구축 전까지 별도 송부하는 양식으로 보고 수행

※ 검사확인서[서식 11]는 내국인에 한해 요청시 발급 가능, 외국인은 발급 불가

VI. 확진환자 발생 시 조치

1. 확진환자 발생 보고 및 통보

- (환자 발생 보고) 최초 인지한 검역소는 질병관리청(종합상황실, 검역정책과, 질병대응센터 감염병대응과)으로 확진자 발생 상황 메모보고
 - * 건강상태질문서, 기초역학조사서 첨부
- (조치결과) 확진환자 이송(병상배정 포함) 및 접촉자 조사 결과 등 메모보고에 의견달기로 공유
- (환자 발생 통보) 검역소는 '감염병자동통보지원프로그램'(또는 공문)을 통해 확진자 거주지 관할 보건소(시·도 포함)에 환자 발생 통보
 - * 확진자 탑승 선박이 회항 또는 자진출항하거나 확진자를 해당 선박 내에서 격리하는 경우에는 통보 불요

※ 국내 거소지가 없는(혹은 불분명한) 외국인의 경우,
<중증 및 고위험군 확진자> 이송한 의료기관 소재지 관할 보건소로 통보
<무증상·경증 확진자> 지자체에서 마련한 재택 격리 입소시설 소재지 관할 보건소로 통보
※ 단, 통보 절차는 검역소 소재 보건소와 협의 가능

- (관련 자료 공유) 확진자의 건강상태질문서 및 기초역학조사서는 관할 보건소(시·도 포함)로 FAX 또는 공문 전송
- (통보방법) 프로그램 내 '비고(특이사항)'란에 “①검역소명, ②입국일, ③방문국가, ④국적, ⑤체류기간” 등 작성 후 통보

2. 격리병상 배정 요청

- (검역관) 재택치료가 불가능한 확진자의 경우, 시·도 연락담당관으로 병상 배정 요청, 이송 담당관 연락처 공유
 - * 각 기관 담당자와 유선통화 후 기초역학조사서 사진 전송
- ※ 역학조사관 또는 공중보건(타부처 파견 의사 포함)가 임시 격리 대상자의 상태가 악화되어 격리병상(의료기관)으로 이송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도 동일한 절차 적용
- (시·도 연락담당관) 지역 내 병상 배정여부 확인 및 해당시설에 병상(실) 가동준비 요청, 병상 배정 결과 및 담당자 번호 검역소에 공유

< 검역단계 확진자 치료병상 배정 절차 >

○ 중증 및 고위험군 확진자

- (인천공항) 내·외국인 관계없이 국립중앙의료원에 병상배정 요청
 - * 다만, 확진자 중 급격한 호흡곤란, 의식저하 등 응급환자 발생 시 환자 거주지와 관계없이 인천 소재 감염병(거점)전담병원에 이송, 해당 사실을 환자 거주지 관할 시·도에 공유(서울, 인천, 경기 지역 환자일 경우에는 '수도권 긴급대응반'에 공유)
 - ** 중수본-1994호(2021.1.18.) 참고

※ 역학조사관 또는 공중보건(타부처 파견 의사 포함)가 임시 격리 대상자의 상태가 악화되어 격리병상(의료기관)으로 이송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도 동일한 절차 적용

※ (인천공항 확진자 이송) 수도권(서울·경기·인천)은 인천소방본부에서, 그 외 지역의 이송은 시·도에서 담당

- (기타 검역소) 검역소 소재지 시·도 연락담당관에게 연락하여 검역소 소재 시·도 환자관리반에서 중환자 병상배정 후 이송, 검역소 소재 시·도에 중환자 병상 부족 시 국립중앙의료원에 전원 지원 요청

○ 무증상·경증 확진자

- 내·외국인 구분 없이 자가용 및 방역 택시를 이용하여 귀가 후 재택 치료 원칙
- * 국내 거소지가 없는(혹은 불분명한) 입국자의 경우, 지자체에서 마련한 재택격리 입소시설에 격리(유료)

3. 확진 환자 이송 및 인계

가. 확진자 이송

- (재택치료 대상자 이송) 자차 및 방역택시(비용 본인부담) 이용하여 귀가
- (재택치료 불가자 이송) 병원에 확진자 이송 및 도착시점 유선알림
 - 이송 대상자는 이송 시 KF94 마스크 착용 유지
 - 이송요원은 Level D 수준의 적절한 개인보호구 착용
 - 구급차 운전자는 개인보호구(KF94 동급의 호흡기보호구와 장갑) 착용
- (재택치료 불가자 인계) 이송요원은 병원 도착 시 의료진에게 기초역학조사서 사본 및 확진환자 인계(의료진에게 환자 건강상태를 설명)

※ 검역소 구급차가 없을 경우, 지원 구급차(보건소 또는 119구급차) 이송요원에게 기초역학조사서 사본 인계 및 환자 상태 설명

◆ 확진자 이송수단 및 방역수칙 안내

- (이송수단) 검역소·보건소·119·민간운영 구급차 또는 개인차량(본인·동거가족 운전) 및 방역(일반) 택시 이용 가능하며,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이송
 - * 개인차량 및 택시 이용시 유의사항 : 운전자는 예방접종완료자로 운전자 및 환자 외 탑승자제
- (방역수칙) KF94 동급 이상이 마스크 및 장갑 착용, 환자 뒷좌석 대각선에 착석, 신체접촉 및 차내 음식섭취 금지, 하차 후 차내·외 표면소독, 운전시 창문개방, 격리장소 외 경유 또는 하선금지
 - * 개인차량, 방역택시 등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, 일반 택시 탑승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나, 이 경우 택시 운전자는 예방접종완료자로 제한함

나. 확진자 이송이 불가능한 경우(항만)

- (조치사항) 국내 병상 부족 등의 사유로 확진자 이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국외 회항을 원칙으로 하되, 회항이 불가하며 재택(또는 보건소 인정 장소) 이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선박 내 격리조치(이동금지 및 격리통지서 발부)
 - * 확진자 격리기간: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이 되는 날 자정(24시)까지
 - ** 선내 격리중 증상 악화 등 필요시 병원진료 가능(선사 또는 해운대리점에서 사전에 의료기관으로 확진자임을 알리고 진료가능 여부 문의)
- (확진자 하선) 확진자는 격리해제 후 하선 가능(격리해제 이후라도 불요불급한 상륙은 제한)
- (하역작업 등) 선박 소독 완료 및 동승선원 PCR검사 결과를 확인하고 확진자와 접촉하지 않도록 조치 후 작업 및 선원교대 등 가능
- (추가검사) 확진자에 대한 추가 검사는 확진일로부터 45일까지 불요

◆ 확진자 발생 선박 입항 시 조치사항(확진자가 선박 내 탑승)

- 검역소장 판단하에 진단검사, 격리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음

VII. 접촉자 관리

1. 접촉자 조사

- ◆ 해외입국자에 대한 격리·진단검사 등 고강도 입국자 관리 및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방역역량을 고려하여 검역단계 접촉자 조사 체계 변경
 - (공항) 기내접촉자 조사 및 지자체 명단 통보 중단
 - (항만) 국내 접촉자(항만근로자 등) 조사 및 지자체 명단 통보 중단(동승선원에 대한 조사는 지속)
- ※ 단, 신규 변이 발생 시 접촉자 조사 재개 가능

2. 확진자 발생 선박 내 동승선원 및 운송수단 관리

- (동승선원 관리) 확진자 발생 선박에 손소독제·마스크·장갑 등을 배포, 동승 선원 중 유증상자는 검역소에서 PCR검사 실시함.
(단, 작업 및 선원 교대없이 국외출항을 선사 등에서 원하는 경우 PCR검사 생략 가능)

- (운송수단 관리) 해당 선박에 대한 이동금지 및 소독 조치

- ※ 확진자 조치 및 선박 소독 완료, 동승 선원 접촉자 중 유증상자 조사 결과 (PCR검사결과 음성) 확인 이후 선박 이동금지 해제(확진자가 선내 격리 중인 경우는 마지막 확진자의 격리해제 이후 이동금지 해제 가능)
- ※ 최초 확진자 발생 후 소독 완료한 경우 재차 소독명령을 하지 않아도 됨

- (하역작업 등) 선박 소독, 확진자 이송 후 선원과 항만근로자 간 접촉을 삼가고, 작업 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

- (국외출항) 확진자가 선내 격리되어 있거나 미결정자가 탑승하고 있는 선박에 대해 선사 등에서 국외출항(회항 등)을 희망할 경우 출항 시 IHR 통보*

* 국제협력담당관 및 해외출입국관리팀에 메모보고로 해당 선원 성명(영문명), 국적, 여권번호, 확진자 발생일, 차항지 도착예정일 등 관련 정보 공유

VIII. 기타 행정사항

- (행정조치) 해당 운송수단에 대하여 의사환자 또는 유증상자 발생 통보 및 소독명령, 이동금지 등 조치, 소독이행여부 확인
 - (관계기관 협조요청) 항공사, 출입국관리사무소, 세관, 공·항만공사 등 관련기관에 이송환자 이송 및 입국수속 조치를 위한 협조 요청
 - 격리로 인한 항공권 변경 등 요청 시 관련업무는 항공사와 협의
 - (검사결과 확인) 격리병원으로 이송 시 PCR검사 결과 확인 절차는 해당 병원과 사전협의
 - (이송수단 등 소독) 공·항만 내 이송환자 이동 동선에 따른 검역구역 및 격리시설(실), 이송수단 등 소독조치 및 확인
 - 코로나19 관련 「집단시설·다중이용시설 소독안내」 및 「국립검역소 격리시설(실) 관리지침」, 「입국자 임시격리시설(실) 소독 안내」에 따라 소독 실시
 - (폐기물 처리) 환자 이송 시 사용한 개인보호복은 탈의 후 정해진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담아 폐기, 격리시설(실)의 경우 「국립검역소 격리시설(실) 관리 지침」, 「입국자 임시격리시설(실) 소독 안내」에 따라 폐기물 처리
 - (검역관/지원인력 감염주의) 현장검역, 검체채취 등의 업무 수행 시 개인보호구 착용 및 위생관리 철저 수행
 - 검역인력 : 의사환자 관리 등의 업무수행 후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 발현 시 검역소장 보고 후 진단검사 실시, 결과 나올 때까지 자가격리 권고
 - 검역지원인력* : 해당기관 담당자가 개인별 건강관리, 유증상자·접촉자 등 확인 시 담당검역관에게 신고
- * 검역지원인력에 대한 진단검사는 유증상 발생 시 역학조사 후 수행하고, 무증상의 경우에도 지원해제시 원 소속기관에서 요청할 경우 실시할 수 있음

○ 공·항만 상주기관 직원 감염관리

- 유증상자 및 확진자의 접촉자 발생시,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진단검사 수행

○ (재검출자 사례) 국내·외 기확진력이 있는 해외입국자가 입국 또는 상륙 후 검사를 받고 검사결과 양성으로 확인된 경우

◆ 사례정의

- (재검출) 격리해제 기준에 따라 격리해제 후 PCR검사 또는 RAT검사(전문가용) 결과 양성이 확인된 경우
- (단순 재검출) 최초확진 후 45일 이내 재검출이며, 확진자 노출력이 없으며, 임상증상이 없는 경우
- (재감염 추정) 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 - 증상 유무에 관계 없이 최초 확진일 90일 이후 재검출된 경우
 - 최초 확진일 이후 45-89일 사이 재검출이면서 증상이 있거나 확진자 노출력(또는 해외 여행력)이 있는 경우

- (사례판정) 사례정의에 따라 단순 재검출, 재감염 추정사례 판정

○ 판정 주체 : 역학조사관 또는 역학조사관 교육을 받은 공중보건의

- 과거 코로나19 확진력이 있는 해외 입국자 중 입국 후 검사에서 양성 판정된 자의 경우 국내·외에서 발급받은 증명서류(코로나19 검사결과지 또는 의무기록)를 통해 확진력이 확인되어야 하며, 증명서류는 아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함
 - ① 검사방법은 Nucleic acid amplification tests 기법에 기초한 검사 또는 RAT 검사(전문가용)이며 검사결과가 양성일 것
 - ② 성명, 생년월일, 검사방법, 검사일자, 검사결과, 발급일자, 검사기관명이 기재되어 있을 것
 - ③ 검사방법 항목은 한글 또는 영문으로 발급되어야 할 것

※ 증명자료 미지참 또는 본인확인 불가능한 서류 등으로 발생하는 격리치료 등은 입국자 본인의 책임

- (환자관리) 단순 재검출의 경우에는 '음성'과 동일한 조치, 재감염 추정사례의 경우에는 '양성'과 동일하게 조치함

- * 미결정자가 단순재검출로 판정된 경우에는 검사결과 판정을 위한 추가 검사는 실시하지 않음

- (보고·통보) 확진자 통보 시 사례판정 결과 포함

○ 제출서류별 보관기관

- 특별검역신고서 : 1개월

* 건강상태질문서의 보존기간과 동일하게 적용함

< 앞면 >

특별검역 신고서
Travel Record Declaration

성명 Name(姓名)	성 이름	생년월일 Date of Birth(出生日期)
국적 Nationality(国籍)	항공기·선박명 Flight·Ship No. (航空·船舶)	
여권번호 Passport No.(护照号码)	도착 연월일 Date of Arrival(到达日期)	
입국일자	기 확인일자	

한국 내 주소 Address in Korea(韩国联系地址) ※ 실제 거주할 주소를 세부주소까지 상세히 기재
※ Please write current residential address(full address). (请填写在韩实际居住的详细地址。)

휴대 전화번호 Mobile Phone No.(手机号码)	전자우편주소 E-Mail(电子邮件)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

최근 14일 동안 방문한 국가명을 적어 주십시오.

Please list all countries you have visited within 14 days prior to arrival.
(请填写过去十四天之内停留过的国家。)

출발 국가명을 적어 주십시오.(Please list the country you departed.)
请填写出发国家名称。

본 신고서 작성을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「검역법」 제12조 및 제3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Pursuant to Articles 12 and 39 of the Quarantine Act, making any false statements concerning your information or failing to fill out this Declaration Form is a criminal offense punishable by one year of imprisonment or less or a fine of up to 10,000,000 KRW.

若回避或虚假填写本调查表, 依据「检疫法」第十二条及第三十九条规定, 可被处以一年以下的徒刑或一千万韩元以下的罚款。

작성일 2022 년 월 일
Date (日期) (MM/DD/YYYY)

작성자 (서명 또는 인)
Completed by (签字) (Signature)

국립검역소장 귀하(国立检疫所长 敬启)
Director of the National Quarantine Station
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



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(Q-CODE) 이용 안내
Quarantine-covid19 defence(Q-CODE) system
Guideline



< 한국어 >

< English >

▶ 이용대상 : 공항 국제선 입국자

USE TARGET : Arriving at International Airport from overseas

해외에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하는 승객은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(Q-CODE)을 이용하여 입국 전에 검역 정보를 입력하면 입국 후 신속한 검역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. 입국 시 발급받은 QR코드를 검역 관에게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Passengers entering Korea from overseas can promptly receive the quarantine service by inputting their quarantine information using the Q-Code before entry.

Please present your QR code issued upon entry to the quarantine officer.

* 항만은 향후 확대 예정(with future plans of extending to ports)

서식 5 기초역학조사서[검역소용]
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역학조사서

1. 조사대상자 인적사항			
1.1 성명		1.2 주민등록번호	-
1.4 국적	<input type="checkbox"/> 국내 <input type="checkbox"/> 국외 ()	1.3 성별	<input type="checkbox"/> 남 <input type="checkbox"/> 여
1.6 연락처 (보호자)	-	1.5 거주지 주소	
		1.7 직업 (직장명, 학교명)	

2. 발생지역 여행력 (해당사항에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표시 또는 기재)			
2.1 최근 14일간 방문 지역 및 기간	국가명: 도시명: 기간: 년 월 일 ~ 년 월 일		
	국가명: 도시명: 기간: 년 월 일 ~ 년 월 일		
	국가명: 도시명: 기간: 년 월 일 ~ 년 월 일		
2.2 여행 목적	<input type="checkbox"/> 관광 <input type="checkbox"/> 업무(출장) <input type="checkbox"/> 해외근무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()		
2.3 입국 시 경유	<input type="checkbox"/> 예 <input type="checkbox"/> 아니오		
2.3.1. 입국시 경유지	입국 경로:		
	항공편/선박명:		
2.4 입국 일시	경유지 공항 밖 출입 여부:	<input type="checkbox"/> 출입함 (출입한 공항: 공항 밖 체류시간:)	<input type="checkbox"/> 출입안함
	년 월 일 시	항공편/선박명 ()	

3. 임상증상 (해당사항에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표시 또는 기재)			
3.1 최초증상	<input type="checkbox"/> 발열 (주인체온: 미온/발열)	<input type="checkbox"/> 호흡기증상	<input type="checkbox"/> 비호흡기 증상
3.1.1 발현 일시	년 월 일 부터	년 월 일 부터	년 월 일 부터
3.1.2 증상의 종류	<input type="checkbox"/> 주관적 호소 <input type="checkbox"/> 미인지 발열 (체온: 1차 - ℃ 2차 - ℃ 3차 - ℃)	<input type="checkbox"/> 폐렴 <input type="checkbox"/> 기침 <input type="checkbox"/> 가래 <input type="checkbox"/> 인후통 <input type="checkbox"/> 호흡곤란	<input type="checkbox"/> 두통 <input type="checkbox"/> 근육통 <input type="checkbox"/> 오한 <input type="checkbox"/> 콧물/코막힘 <input type="checkbox"/> 후각저하(후각상실) <input type="checkbox"/> 미각저하(미각상실)
		<input type="checkbox"/> 구토 <input type="checkbox"/> 복통 <input type="checkbox"/> 설사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 ()	
3.2 증상 소실 여부	<input type="checkbox"/> 증상소실 <input type="checkbox"/> 증상지속 (증상소실일자:)	<input type="checkbox"/> 증상소실 <input type="checkbox"/> 증상지속 (증상소실일자:)	<input type="checkbox"/> 증상소실 <input type="checkbox"/> 증상지속 (증상소실일자:)
3.3 해열제 복용여부	<input type="checkbox"/> 예 (미지막 복용시간: 월 일 시) <input type="checkbox"/> 아니오	3.4 흡연여부	<input type="checkbox"/> 예 <input type="checkbox"/> 아니오
3.5 기저 질환(질병력)	<input type="checkbox"/> 예 (기저질환:) <input type="checkbox"/> 아니오	3.6 임신 여부	<input type="checkbox"/> 예 (주) <input type="checkbox"/> 아니오
3.7 의료기관 진단	<input type="checkbox"/> 폐렴 <input type="checkbox"/> 급성호흡곤란증후군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 () <input type="checkbox"/> 흉부방사선촬영: <input type="checkbox"/> 예 (소견:) <input type="checkbox"/> 아니오		

4. 역학적 연관성			
4.1 동반자	<input type="checkbox"/> 단독(1인) <input type="checkbox"/> 2인 이상 여행(가족, 업무 등) (동행자: 명, 관계)		
4.2 감염위험요인 (발병일로부터 14일 이내)	<input type="checkbox"/> 국내외 확진환자 접촉	환자이름 / 관계:	
	<input type="checkbox"/> 급성 호흡기증상자(발열, 기침, 폐렴 등)와의 접촉	접촉날짜 및 장소:	
	<input type="checkbox"/> 현지의료기관 방문	접촉일: 년 월 일	
	<input type="checkbox"/> 코로나19 PCR / RAT 검사 여부	접촉일: 년 월 일, 방문사유:	
4.3 과거 코로나19 확진력	<input type="checkbox"/> 예 <input type="checkbox"/> 아니오	예: (음성/양성, 날짜:)	년 월 일
		아니오	
	<input type="checkbox"/> 예방접종력(차후, 백신종류)	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 없음	
		최초확진일: 년 월 일	

중앙역학조사반 작성란			
사례분류	<input type="checkbox"/> 확진환자 <input type="checkbox"/> 감염병 의심자 <input type="checkbox"/> 사례 '미해당'		
	역학적 연관성	<input type="checkbox"/> 해외방문 () <input type="checkbox"/> 확진환자 접촉	임상증상
검역소 조치사항(중복기입)	<input type="checkbox"/> 폐렴 <input type="checkbox"/> 발열+호흡기증상 <input type="checkbox"/> 발열 <input type="checkbox"/> 호흡기증상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()		
검체채취 구분	<input type="checkbox"/> 시설 격리 <input type="checkbox"/> 국가 지정 입원치료병상()으로 이송 <input type="checkbox"/> 보건교육		
담당 역학조사관	<input type="checkbox"/> 국가 지정 입원치료병상 채취 <input type="checkbox"/> 검역소 격리시설 검체채취 <input type="checkbox"/> 검역소 내 검체채취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()		
	사례분류 일시	년 월 일 시	

서식 6 격리통지서

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22호서식] <개정 2021. 12. 30.>

[] 입원 · [] 격리 통지서			
성 명		생년월일	
입원 · 격리 사유			
입원 · 격리 내용	입원일 · 격리시행일		
	입원기간 · 격리기간		
장소	입원 · 격리	[] 병원 · 의원() [] 자택 [] 시설()	
	주소	주소	
<p>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됨을 통지합니다.</p> <p>※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3조 및 별표 2에 따른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을 준수해야 하고,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79조의3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</p> <p>※ 이 통지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「행정심판법」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「행정소송법」에 따라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년 월 일</p>			
<p>질병관리청장, 특별시장 · 광역시장 · 도지사 ·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</p>			<p>직인</p>

210mm × 297mm 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

서식 7 입항선박 검역조사 방법 결정을 위한 점검사항

□ 점검 항목

순서	점검 항목	검역조사 방법 분류
①	선내 검역감염병 환자등 또는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	승선검역
②	입항일 기준 14일 이내 선원교대 등으로 승선자가 있는 경우	승선검역
③	선박위생관리증명서(유효기간 만료 포함) 미소지 선박	승선검역
④	기타 검역소장이 승선검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선박 * 마스크 및 장갑 등 개인보호구 착용 가능여부 고려 ※ 도선사 등 '검역 전 승선허가자'는 예외	승선검역

- 검역조사 방법

- (승선검역) ①, ②, ③, ④
- (전자검역) '①' ~ '④' 중 전부 "미해당" 인 경우

□ 점검 시점 : 입항 전 또는 변경 신고가 접수된 경우

서식 8 감사의뢰 관리대장 양식(엑셀작성)

* 향후 비용지급의 근거로 활용되어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확히 기재 필요

** 외국인의 경우 생년월일 작성(비고에 여권번호 기재)

연년	의뢰일	성 (Surname)	이름 (Givenname)	국적 (Nationality)	생년월일	운송 수단명	검체 종류	의뢰기관명	판정결과	판정결과 통보일	인수자	입체자	비고
(예)	2020-03-01	홍	길동	REPUBLIC OF KOREA	yymmdd		상기도 또는 하기도		양성 또는 음성	2020-03-02			
(설명)	yyyy-mm-dd 형식 유지	성명 작성 - 내국인은 "한글명"으로 작성 - 외국인은 여권에 명시된 "영문명"으로 띄어쓰기 일지하게 작성	이름 (Givenname)	국적 (Nationality) -에 시)REPUBLIC OF KOREA COFKOR EA(o) 대한민국 (x) 한국(x) South Korea(X)	생년월일 주민번호 앞자리 형식 (yymmdd)으로 6자리 기재	운송 수단명	검체 종류 하나의 셀에는 하나의데이 터만기재 (★ 검체 1건을 기준으로 작성!!) 1명이상 하기도2건검사 했을 경우, 상 하기도 각각 분리하여 작성 (셀추가하여 2줄로작성) - 구인두, 객담, 구, 비, 객 등으로 나열 표기 금지	의뢰기관명	판정결과 미결정(indeterminate)은 데이 터에서 삭제	판정결과 통보일 yyyy-mm-dd 형식 유지	인수자	입체자	비고
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검사확인서

신청인	성명		국적	
	생년월일		운송수단명	
	주소			

■ 검체 채취

검체번호	검체 채취일	검체 채취자	검체 종류	채취 목적	비고

위 사람의 _____ 에 대한 _____ 의 실험실 검사를 실시한 결과는
(검체) (병명)
다음과 같습니다.

■ 검사결과

검사항목	최종결과	결과 판정일	비고

* 이 확인서는 본인 검사결과 확인 외의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.

____년 ____월 ____일

국립○○검역소장 직인

서식 1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접촉자 조사 양식

순번	접촉자명	생년월일	성별	주소	상세주소	접촉자구분	격리구분	내국인	국적	핸드폰	연락처	직업/직장명 (학급명)	최종접촉일	의향/차별
	떠어쓰 기 금지	생년월일 년도(4자리) 월(2자리) 일(2자리) 등록 숫자만 입력 (예시 : 20160905)	1.남 2.여	주소를 기준으로 시도, 사군구 코드를 수기로 선택 매칭		01[의료진] 02[의료진 기타] 03[환자] 04[가족] 05[동료] 06[기타]	1[격리안함] 2[격리해제] 3[자가격리] 4[병원격리] 5[코호트 격리]	Y : 내국인 N : 외국인 반드시 국적입력	내국인 항목 'N' 선택 시 텍스트 입력	숫자만 입력	숫자만 입력	텍스트 입력	숫자만 입력	Y : 예 N : 아니오
1	홍OO	19710101	1[남자]	서울 마포 상수동	111-11	1[의료진]	3[자가격리]	Y		0101234 1234	0212341 234	OO병원	20150630	Y
2	홍OO	19710102	1[남자]	서울 마포 상수동	111-11	4[가족]	3[자가격리]	Y		0101234 1234	0212341 234	OO학교	20150630	N
3	MOO	20010101	1[남자]	서울 마포 상수동	111-11	2[의료진 기타]	3[자가격리] 1	N	중국	0101234 1234	0212341 234	OO기업	20150630	N
4	홍OO	20010103	1[남자]	서울 마포 상수동	111-11	4[가족]	3[자가격리] 1	Y		0101234 1234	0212341 234	무직	20150630	N

부록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인을 위한 실험실 검사 관리

※ 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 지침(지자체용)」 참고

1. 검체 채취

가. 채취장소

- 선별진료소 또는 의료기관 내 다른 공간과 격리된 검체 채취 공간

▶ 단, 선내 격리 및 자가격리일 경우 격리장소에 따라 채취장소 변동 가능성 있음

나. 검체종류 및 포장

1) 검체종류

- ▶ 상기도 검체(권장), 기침이나 가래가 있는 경우 하기도 검체
- ▶ 경증인 자는 상기도 검체만 채취하여 검사 의뢰

번호	검체 종류	용기 및 용량	비고
1	상기도 ▶ 비인두도말물	▶ 바이러스 수송배지 (VTM)에 채취	▶ 분리된 독립공간에서 채취 ▶ 비인두도말물 채취가 어려운 경우* 구인두도말물로 대체
2	하기도 ▶ 가래	▶ (용기) : 멸균 50ml 튜브 ▶ (검체량) : 3ml 이상	▶ 가래가 있는 환자에서 채취 ▶ 가래 유도 금지(에어로졸 발생 가능성 있음) ▶ 정확한 진단을 위해 가래 채취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음압실에서 채취 (음압 시설이 없는 경우, 에어로졸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, 외부 환기가 잘 되는 독립된 공간에서 채취)
<p>* (비인두도말물 채취가 어려운 경우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해부학적 또는 의학적인 이유로 비인두까지 면봉 삽입이 어려운 경우 - 의사소통이 불가하여 비인두도말 채취를 위한 협조가 어려운 경우 -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, 비인두도말물 채취가 불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 <p>※ 단순 통증·불편감은 해당하지 않음</p>		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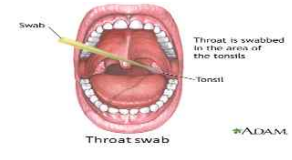
- (상기도 검체) 면봉을 이용하여 상기도 검체를 채취하고, 검체를 채취한 면봉을 바이러스 수송배지에 담아 검체시험의뢰서[서식 11]와 함께 수송

- ▶ **비인두도말물(Nasopharyngeal swab)** : 콧구멍을 지나 입천장과 평행한 각도로 면봉을 밀어넣고 하비갑개 중하부에서 분비물을 긁어서 채취, 하비갑개 중하부에서 몇 초간 분비물을 흡수할 수 있는 시간을 두도록 하여 채취
- ▶ **구인두도말물(Oropharyngeal swab)** : 뺨 안쪽, 혀 뿌리 등이 아닌, 혀를 누르고 편도 주변 인두후벽에서 분비물을 긁어서 채취하되, 분비물을 충분히 흡수하여 채취

[비인두도말물 채취 방법]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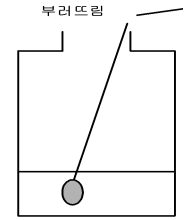
[구인두도말물 채취 방법]



출처: ADAM, 인플루엔자, 신종인플루엔자 범 부처 사업단(TEPIK)

▶ 검체 용기 보관 방법

- 수송배지가 담긴 병에 도말한 면봉을 담고 병마개 부위에서 면봉을 부러뜨린 후 뚜껑을 단단히 잠그도록 함
- 부러뜨릴 때 안쪽에 손이 닿아 오염되지 않게 주의
- 검체가 담긴 병은 즉시 냉장고(4℃)에 보관
- 검체채취 후 반드시 채취용기에 환자의 인적사항(성명, 성별, 연령) 및 채취일을 기입
- 검사 의뢰서를 작성하여 검체와 함께 의뢰(4℃ 유지)



- (하기도 검체) 환자 스스로 구강 내를 깨끗한 물로 세척한 후, 멸균용기(가래통 등)에 타액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깊이 기침하여 채취

▶ 검체가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수송 시 누출되지 않도록 완전히 밀봉(3중 포장) [가래 채취 방법]

1. 구강 세척

2. 무균용기 사용

3. 기침하여 가래 채취

4. 완전 밀봉(4℃ 유지)

2) 검체포장

- 채취된 검체가 포함된 1차 용기를 소독처리(70% ethanol)한 후 라벨 작성

▶ 병원명, 검체종류, 채취일, 환자명, 성별, 나이 등의 정보 표시

- 소독 처리된 1차 용기를 흡수제(종이타올 등)로 감싼 후 2차 용기에 넣음
- 2차 용기의 뚜껑을 단단히 잠근 후 3차 용기에 넣음
- 검체 시험의뢰서를 3차 용기 뚜껑 사이에 넣은 후 포장
- 3차 수송용기 겉면에 보내는 사람, 받는 사람, 응급상황 시 연락처를 기재
- 3차 수송용기를 아이스박스에 넣은 후 냉매제(아이스팩)를 용기 주변 4면에 삽입
- 포장된 아이스박스의 겉면에 감염성 물질 표시, UN 3373 표시, 방향 표시, 보내는 사람, 받는 사람, 응급상황 시 연락처 등을 기재

[3중 포장용기(예시)]

구분	1차 용기	2차 용기	3차 용기
포장용기			

다. 주의 사항

- 검체 채취 시, KF94 또는 동급의 호흡기보호구, 일회용 장갑, 일회용 긴팔가운,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(필요시 불투과성 일회용 앞치마 추가 착용) 등의 개인보호구를 필수적으로 착용 및 검체 채취 후 소독 필수

2. 검사 의뢰

- (검역소) 검체의뢰 관리대장[서식 10] 작성하여 검체와 함께 의뢰
 - * 질병관리청으로 의뢰하는 경우에는 검체 시험의뢰서[서식11] 작성, 보건환경연구원 등은 해당기관 서식 사용
- (검역소) 검체채취 후 권역센터(진단분석과 실험실) 소관 실험실로 검사 의뢰(필요시 수탁기관 활용)

3. 검체 운송

가. 검체운송 담당

- (질병대응센터에서 검사할 경우) 검역소 담당자나 검체운송기관이 질병대응센터로 운송
- (수탁기관에서 검사할 경우) 검역소 담당자나 수탁검사기관 운송체계에 따라 운송

▶ 검체 운송 담당자는 KF94 동급의 호흡기보호구, 장갑 착용하고, 검체의 종류, 채취시간, 이송시간 정보를 확인하여 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과 질병대응센터로 상황보고

나. 검체 운송 중 보관 조건

- 바이러스 분리 및 유전자 검사용 검체 : 4℃를 유지하여 즉시 수송

▶ 72시간 내 운송 불가능한 경우 -80℃에 보관 후 드라이아이스를 이용해 수송

다. 검체 운송 시 유의사항

- 검체 수송 담당 지정
- 감염성물질안전수송지침(질병관리청) 준수
- (수송 차량 선정 및 비치) 포장된 검체를 자가운전 차량(또는 지정차량) 트렁크에 비치하여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하고, 수송차량 내부에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적절한

개인보호구와 오염처리 장비(스필 키트), 소독제, 삼각대 등을 준비

- (이동 경로 선정 및 주의사항) 최단거리 및 안전한 경로를 지정하여 기관 책임자에게 보고 후 출발하고, 미리 정해진 이동 경로로만 이동(휴게소 이용 시 정지된 차량에 필수 인원 잔류)하고 이동 중 방어 운전과 도로교통 신호 및 규칙 준수

4. 검사 기관

◆ 기관에서 실시한 확진 검사에서 최초 양성을 확인한 경우, 질병관리청과 2중 확인 필요 (최초 양성 1회에 한하며, 이후에는 검사기관 자체 양성 판정 가능)

- (권역별 질병대응센터) 검역소에서 의뢰한 검체에 대한 유전자 검사

5. 검사 결과 보고

- (검사기관) 검사기관에서는 검사를 의뢰한 검역소 및 방대본 진단총괄팀, 해외출입국 관리팀으로 검사결과 통보(메모, 유선)

- 검사결과는 검역관을 통해 대상자(조사대상 유증상자)에게 통보 및 설명

▶ 양성인 경우 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(043-719-7789, 7790)로 당일 보고

- 재검 필요시, 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검사실 진단지침」과 「COVID-19 검사 Q&A」 최신판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정

▶ 해당 지침은 '대한진단검사의학회 홈페이지'에서 확인 가능
▶ 최초 검사에서 미결정 결과가 나온 경우에는 검체를 재채취하여 재검사

- 격리해제 전 검사에서 미결정에 대한 판정이 연속 2회 이상 반복될 경우, 검사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격리해제 여부 결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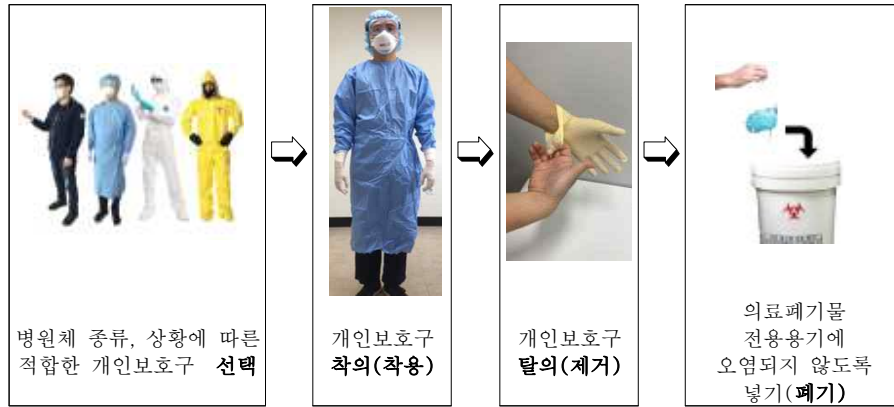
부록 2 코로나19 대응 상황별 개인보호구 권장 범위

□ 적용범위

-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의사환자, 확진환자 및 접촉자에 대한 대응 과정 전반
 - 검역, 이송, 역학조사, 선별진료, 진료, 처치, 검체채취 및 검체이송, 검사, 수술, 기구관리, 환경관리, 사체관리 등

□ 주요내용

- 개인보호구의 종류, 선택, 착·탈의 및 주의사항, 의료폐기물로 배출



□ 사용 원칙

- 재사용이 불가피한 장비·제품을 제외하고 일회용 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함
- 재사용이 불가피한 장비는 반드시 제조사 권고에 따라 소독 또는 멸균 처리
- 표준주의, 접촉주의, 비말주의(또는 공기매개주의)를 포함한 감염관리 방법 준수
- 감염 예방에 효과적이라면 개인보호구의 선택과 올바른 사용이 중요함
 - 감염원과 접촉 전에 착용(예: 환자 접촉 전, 격리병실 밖)
 - 착용 할 때 보호구별 착용 방법 준수(특히, 호흡기보호구의 밀착 상태)
 - 사용한 개인보호구에 오염된 병원체가 주변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주의
 - 착용 상태에서 환자 이외의 주변을 접촉하여 오염시키지 않도록 주의
 - 벗을 때 본인의 신체 부위와 주변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주의
 - 사용한 개인보호구는 감염원으로부터 안전한 곳에서 제거(예: 격리병실 밖의 갱의실 등)

- 사용한 개인보호구는 무조건 오염으로 간주하여 벗자마자 주변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 의료폐기물상자에 버려 폐기되도록 함
- 모든 개인보호구는 일회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
- 파손되거나 오염된 개인보호구는 사용·보관하지 말고 폐기
- 사용한 개인보호구 중 재사용이 불가피하고 소독 처리가 가능한 장비에 한하여 적절한 소독 처리 후 사용
- 눈에 보이지 않게 손과 신체 일부, 의복이 오염될 수 있으므로 개인보호구를 벗은 후에 항상 손위생(손씻기 또는 손소독)과 개인위생 철저

□ 개인보호구의 종류와 용도, 상황별 권장범위

- 개인보호구는 호흡기, 눈, 손, 발을 포함한 전신과 의복을 감염원으로부터 보호하도록 고려하여 선택
 - 일회용 방수성 긴팔가운, 일회용 장갑, 마스크(N95 또는 KF94 이상),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, 장화 또는 신발커버 등
- 개인보호구는 질환별 또는 감염경로, 감염 노출 상황·행위, 용도에 맞게 보호구를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이 중요
- 개인보호구별 특성과 용도

보호구	위해요소	특성 및 용도(indications for use)	참고사진
일회용 장갑 (Glove)	접촉	-손 오염 방지 -노출정도를 고려하여 재질 선택 -파우더 알러지 있을 경우 파우더 없는 제품 또는 나이트릴 제품 사용	
일회용 방수성 긴팔가운 (Gown)	비말, 혈액, 체액이 전신이나 의복에 튀	바이러스 비말이 전신과 의복에 오염되어 간접 전파 되는 것을 방지	
전신보호복 (Coveralls)	비말, 혈액, 체액이 전신이나 의복에 튀	바이러스 비말이 전신과 의복에 오염되어 간접 전파 되는 것을 방지	
덧신 (Shoe covers)			

보호구	위해요소	특성 및 용도(indications for use)	참고사진
장화 (Boots)	혈액, 체액이 신발에 튀	-신발덮개 대신 착용 -바닥이 젖거나 오염이 심할 경우 -노출위험에 따라 선택	
모자 (Hair cap)	머리의 오염	비말이 머리에 오염되는 것을 방지	
고글 (Goggle)	혈액, 체액이 눈의 점막에 튀	-눈의 점막 오염 방지 -고글 재용 시 바이러스에 효과적인 소독제로 소독 후 사용, 보관	
안면보호구 (Face shield)	혈액, 체액이 눈의 점막에 튀	- 눈의 점막과 안면부 오염 방지 - 노출 위험 정도에 따라 고글 대신 착용 - 안면보호구 재사용 시 바이러스에 효과적인 소독제로 소독 처리 후 사용, 보관	
호흡기보호구 : KF94 등급 이상의 호흡기보호구	비말 또는 에어로졸 흡입	- 코, 입 점막을 통해 호흡 시 병원체 입자가 유입되는 것을 방지. - 적용상황 예 : • 의심/확진환자 격리병실 입실 시 (의료 종사자, 방문객 포함한 모든 출입자) • 기침유도 시술 시 • 에어로졸 생성 처치 시 • 의심/확진환자 이송 시 등	
호흡기보호구 : PAPR	비말 또는 에어로졸 흡입	- 코와 입의 점막을 통한 감염원 흡입 방지 - 전지충전, 필터교환, 장비 소독 등 철저한 점검, 관리가 필요함 - 파손, 오작동 여부를 사전 점검하여 사전 수리, 교체 또는 폐기하여야 함 - 재사용이 불가피하면 소독 처리 후 사용, 보관	

○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 상황별 개인보호구 권장 범위

구분	상황, 행위	개인보호구					
		호흡기 보호			전신 보호		눈 보호
		수술용 마스크	KF94 등급의 호흡기 보호구	전동식 호흡기 보호구	일회용 장갑 ¹⁾	일회용 방수성 진팔가운	고글 (또는 안면보호구)
검역	검역(검역조사)		●		●		
	검역(역학조사)		●		●	●	●
선별 진료소	선별진료소 접수, 안내		●		●	●	
	선별진료소 진료, 간호		●		●	●	●
이송	이송(구급차 운전자) ²⁾		●		●		
	확진/의심 환자 이송(검역관 보건소직원, 응급구조사 등)		●		●	●	●
	의심환자 동승 보호자	●					
진료	확진/의심환자 병실출입, 진료, 간호 등		●		●	●	●
	에어로졸 생성 처치 ³⁾			● (선택 사용 가능)	●	●	●
	검사(X-ray 등 영상의학검사)		●		●	●	●
	호흡기 검체 채취		●		●	●	●
검체 관리	검체 취급(실험실, 검사실 등) ⁴⁾⁵⁾		●		●	●	●
	검체 이송(파손없이 포장된 검체)	●			●		
장례	시신 접촉		●		●	●	●
	시신백 이송, 관 운구	●			●		
청소· 소독	청소·소독 ⁶⁾		●		●	●	●
폐기물	의료폐기물 포장, 취급		●		●	●	●
	의료폐기물 운반	●			●	●	

▶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9-86호, 의약외품 범위 지정에 따른 수술용 마스크로 제한.

- 1) 구급차 운전석이 차폐되어 있지 않거나 의심환자 또는 확진환자 접촉의 기회가 있을 경우 전신 보호복(덧신포함), KF94 등급의 호흡기보호구, 장갑(필요 시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추가) 착용
- 2) 에어로졸이 생성되는 처치는 기관삽관(endotracheal intubation), 심폐소생술, 기관지내시경술, 기도분비물 흡인, 기관관리(tracheostomy care), 사체부검, 비침습적 양압환기(Continuous positive air pressure), 분무요법(nebulizer therapy), 가래배출 유도의 처치, 상황, 행위를 말함
- 3) 검체 취급 실험실·검사실에서 개인보호구 선택, 사용, 관리에 관한 사항은 「실험실 생물안전지침」(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생물안전평가과)에 따름
- 4) ClassII급의 생물안전작업대 작업 시 가운(긴팔), 일회용 장갑 착용
Lee H, Ki C-S, Sung H, et al. Guidelines for the Laboratory Diagnosis of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in Korea. Infection & chemotherapy. 2016;48(1):61-69.)
- 5) 병실, 구급차 등 청소·소독 시에 해당하며, 상황에 따라 방수성 앞치마 등 착용

○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 상황별 개인보호구 예시

- 긴팔가운을 포함한 4중(KF94 등급의 호흡기 보호구, 장갑, 방수성 긴팔가운,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) 사용



- 4 중 또는 전신 보호복 충족 요건

보호대상	개인보호구	필수여부		개인보호구 충족요건 또는 적용상황
		4중	전신 보호복	
호흡기	일회용 KF94 등급의 호흡기보호구	○	○	-
	PAPR(KF94 등급의 호흡기보호구 대체)		필요시	에어로졸 발생되는 처치 시(KF94 등급의 호흡기보호구 대체)
눈	고글(또는 안면보호구)	○	○	김서림방지 및 긁힘 방지 코팅 처리
전신 의복	일회용 전신보호복	○	○	방수성 또는 2-3시간 이상 방수 유지 혈액 및 바이러스 불침투 되는 제품
	일회용 장갑	○	○	손목까지 덮을 수 있는 장갑, 두 겹 착용
	일회용 덧신(신발덮개)		○	발목 높이의 미끄럽지 않은 재질
	일회용 덧가운/앞치마		필요시	몸통에서 종아리까지 덮을 수 있는 보호구 예) 투석이나 지속적 신대체요법 시 착용

□ 개인보호구 착용 및 탈의 안내

○ 개인보호구 4종 착의 예시 순서

		
1. 개인보호구를 준비한다.	2. 손 위생을 시행한다.	3. 가운을 입는다.
		
4. 마스크를 착용한다.	5. 손가락으로 마스크의 코 접촉 부위를 눌러 밀착시킨다.	6. 양손으로 마스크를 움켜쥐고, 흡입/배기하면서 새는 곳이 없는지 확인한다.
		
7. 고글이나 안면보호구를 착용한다.	8. 장갑을 끼고 옷소매 위를 덮도록 주의하여 착용한다. (경우에 따라 장갑을 한 벌 더 착용할 수 있다.)	

○ 개인보호구 4종 탈의 순서

		
1. 장갑을 벗는다. 한 손으로 반대편 장갑을 벗겨 손에 쥐고 장갑이 벗겨진 손으로 남은 장갑을 조심스럽게 벗겨 말아서 버린다.		2. 속장갑을 착용한 경우 속장갑을 소독하고, 속장갑을 착용하지 않은 경우 손 위생을 시행한다.
		
3. 가운데의 환자 접촉 부위를 안으로 말아주면서 신체에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탈의한다.		4. 손 위생을 시행한다.
		
5. 고글 혹은 안면보호대 앞면을 만지지 않고 제거한다.	6. 손 위생을 시행한다.	7. 마스크를 제거한다.
		
8. 손 위생을 시행한다.	9. 속장갑(착용한 경우)을 제거한다.	

□ 개인보호구 착용(착용) 및 제거 원칙

○ 착용(착용)

- 상황에 따른 개인보호구 권장 범위에 따라 미리 물품을 준비하여 올바른 착용 ▶ 순서와 방법으로 착용

- ▶ 머리는 단정히 묶거나 고정하고 시계, 장신구 등을 제거하여 오염 방지
- ▶ 탈수 예방을 위해 보호구 착용 전 수분을 보충하고 미리 화장실에 다녀옴
- ▶ 착용 후 오염, 파손이 있을 경우 처치, 행위 사이에 개인보호구 교체
- ▶ 속장갑이 젖을 정도라면 근무자 교대

○ 탈의(제거)

- 감염원로부터 안전한 곳(예: 격리병실 밖의 갱의실 등)에서 개인보호구에 오염된 감염원이 신체 부위와 주변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주의하며 탈의
- 각 보호구는 벗자마자 주변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주의하며 올바른 순서와 방법으로 탈의하여 의료폐기물 상자에 바로 버림

안 내 문

1. 이곳은 국립검역소 격리시설입니다.
2. **감염병 검사 결과를 확인할 때까지** 이곳에서 대기하여야 합니다.
※ 감염병으로 확인되면 **지정병원으로 이송되어** 치료를 받게 되며, 감염병이 아니라면 **보건교육 후** 귀가하게 됩니다.
3. 검역관이 검사결과를 통보할 때까지 외부 출입을 금합니다.
4. 식사는 퇴실 전까지 무료로 제공됩니다.
5. 검역관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비치된 **전화기를 이용하여 호출해** 주시기 바랍니다.
6. 침대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.
7. 이 격리시설은 **금연구역**이므로 건물 내 금연하시기 바랍니다.
8. 다른 입실자를 위하여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
9. **발열, 기침,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악화될 경우** 검역관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.

건강 안전 수칙

1. 손씻기, 손소독 등 **개인위생**을 철저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2. 발열과 호흡기 증상(기침, 목 아픔, 콧물 등)이 있는 경우 관찰실내에서는 **마스크를 항시 착용**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Guidelines for Quarantine Subjects

1. This is a **quarantine facility** of the National Quarantine Station.
2. Wait here until your **infectious disease test results have been verified**.
 ※ Patients testing positive for infectious disease will be **transferred to a designated hospital for treatment**, while patients testing negative will be able to go **home following a class on public health education**.
3. Patients are prohibited from going outside until a quarantine officer provides notification of test results.
4. Free meals are provided until leaving this facility.
5. For required assistance from a quarantine officer, please **call an officer by using one of the facility phones**.
6. Please be careful not to fall from the bed.
7. This facility is a **non-smoking area**. Please do not smoke inside the building.
8. Please keep the noise level down out of respect for other patients in the facility.
9. Please notify a quarantine officer upon the worsening of **fevers, coughing, breathing difficulties, and other symptoms**.

Health & Safety Rules

1. Please pay particular attention to **personal hygiene** by thoroughly washing and disinfecting hands.
2. If experiencing a fever and respiratory symptoms, e.g. coughing, sore throat, and runny nose, please **wear a mask at all times** while inside the monitoring room.

隔离者须知

1. 这里是韩国国立检疫所**隔离室**。
2. 在**传染病检查结果出来前**，需在此等待。
 ※ 若确诊为传染病则**移送至指定医院接受治疗**，若未感染传染病则接受**保健教育后即可回家**。
3. 在检疫官通知检查结果之前，禁止外出。
4. 在隔离室期间，免费提供饮食。
5. 如需检疫官的帮助，请**使用提供的电话进行呼叫**。
6. 请注意不要跌落至床下。
7. 此隔离室为**禁烟区域**，请勿在建筑物内吸烟。
8. 请不要发出噪音打扰他人。
9. 若**发热、咳嗽、呼吸困难**等症状恶化，请告知检疫官。

健康安全守则

1. 务必注意洗手、手部消毒等**个人卫生**。
2. 若有发热和呼吸困难症状（咳嗽、嗓子疼、流鼻涕等），务必随时在观察室内**佩戴口罩**。

군용(軍用) 운송수단의 경우, 입항목적 및 관리주체가 명확함에 따라 해당 운송수단에 대한 행정절차는 간소화하고, 입국자에 대한 감염관리 철저

※ 본 절차는 코로나19 대응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, 변경시 공문 등으로 사전 안내

※ 미해군 운송수단 대상 검역절차는 미측과 협의완료 후 반영 예정

1 한국항에 들어오기 전

- (입항전 건강확인) 발열체크 또는 건강상태질문서* 제출하여 증상 분류
- (검역신고) 외항선 입항·출항 통보서를 작성하여 한국에 들어오기 24시간전에 관할 검역소장에게 제출(대리점을 통해 전산으로 제출 가능)

2 한국항에 들어온 후: 검역감염병 환자 유무에 따라 절차 구분

구 분	① 검역조사 일부 생략 시	② 승선검역 시
조건	코로나19 환자, 의사환자, 병원체 보유자, 사망자가 없다고 통보한 경우	코로나19 환자, 의사환자, 병원체 보유자, 사망자가 있다고 통보한 경우
입항 전 신고방법	외항선 입항·출항 통보서 제출 (선박종류를 군용 운송수단으로 신고)	좌동
입항 전 제출 서류	건강상태질문서	좌동
입항 후 제출서류	없 음	① 승무원 및 승객 명부 ② 건강상태질문서 ③ 선박 보건상태 신고서
검역방법	서류 확인 및 관련 시스템을 통한 검역조사	서류 확인 및 검역관이 직접 승선하여 검역조사

※ 군용 운송수단이나 선박종류가 상이한 경우에는 해군 등에서 검역소로 증빙서류 제출(공문)

① (검역조사 일부 생략 시) 관할 검역소장에게 검역감염병 환자 등*, 사망자와 감염병 매개체가 없다고 통보한 군용 운송수단은 다음의 절차에 따름 (검역법 제6조제3항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)

* (검역감염병 환자등) 검역감염병 환자, 의사환자, 병원체 보유자

- 군용 운송수단의 경우 검역감염병 감염·위험요인 여부 확인 절차를 제외한 나머지 검역조사는 생략가능(검역법 제12조제1항제2호)
- 검역조사 생략 신청은 외항선 입항·출항 통보서·건강상태질문서 제출로 같음
- 검역감염병 감염·위험요인 여부는 건강상태질문서 제출로 확인
- * 유증상자가 없는 경우 검역감염병 환자 등이 없는 것으로 판단
- 검역소장은 제출 받은 외항선 입항·출항 통보서 및 건강상태질문서 확인 후 검역조사 생략

② (승선검역 시) 관할 검역소장에게 검역감염병 환자 등이 있다는 사실을 통보한 군용 운송수단은 다음의 절차에 따름(검역법 제6조 제3항제3호 및 같은법 제12조의4제3항)

- 감염병의 국내 전파 위험을 고려하여, 검역관이 해당 선박에 승선하여 검역조사 실시(검역법 제12조의4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의5)
- * 검역감염병 확진자 발생 시 탑승인원 전원에 대한 발열체크, 건강상태질문서 징구 및 유증상자 및 접촉자에 대한 PCR검사 실시
- 운송수단의 장은 검역조사 시 관할 검역소장에게 승무원·승객 명부, 개인별 건강상태질문서*, 선박보건상태신고서 제출
- * 선박 내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별 건강상태질문서 대신, 의사가 대표로 선내 모든 승객·승무원의 건강 확인서 제출 가능

③ 하선자 증상별 관리

- (유증상자) 발열체크, 건강상태질문서 확인 결과 하선자(상륙 포함) 중 유증상자는 PCR검사 등 실시
 - * 불요불급한 하선 제한, 국방부(해군 등) 관리 하 군사 보안구역 내 일정공간에서만 머무르는 경우, 입국심사 또는 상륙허가를 받지 않으므로 하선으로 보지 않음(특별입국절차, PCR검사 미실시)
- (검사절차) 검역소 인력 부족시 검체는 함정 내 의료진(또는 해군 등)이 채취하며, 검체에 대한 PCR검사는 검역소에서 수행(수탁 등)
 - * 운송수단 내에서 PCR검사가 가능한 경우에는, 검사 후 검역소로 결과 통보
- (무증상자) 하선 후 3일 이내 PCR 자율 검사
 - (특별검역신고서) 관리주체가 명확함에 따라 생략 가능

④ 검사결과에 따른 조치

- ('음성'인 경우) 하선 허용 및 검역확인증 발급
- ('양성'인 경우) 확진자는 재택, 병원 이송
 - * 국방부 등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격리시설도 가능
 - ※ 재택치료 관련 사항은 「코로나19 재택치료 안내서」 및 「코로나19 검역대응 지침」에 따름
- (확진자) 재택치료 불가 시 지자체에 병상배정 협조요청(검역소), 확진자 이송(국방부, 해군 등)
- (접촉자) 확진자의 접촉자는 국방부(해군 등) 관리 하 10일간 수동감시
 - ※ 군에서 역학조사 시, 역학조사관이 접촉자 범위 및 재검출자 판단 가능
- (소독명령) 검역소장이 소독명령 및 이동금지 조치 시행
 - * 소독완료 후 검역소장에게 소독결과보고서(소독업무대행자) 제출시 이동금지 해제
 - ** 소독업무대행자가 아닌 운송수단의 장이나 화물소유자·관리자가 소독을 하는 경우 소독기준은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별표 6에 따르며, 소독 결과는 사용약물, 소독방법, 소독일시 등을 포함하여 자료제출(별도 양식 없음)
- (하역 등 작업)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하 작업 가능

- (확진자 이송 불가시) 확진자 이송이 불가한 경우에는, 해당 선박 내 격리조치(검역소장은 이동금지 및 격리통지서 발부)
 - * 확진자 격리기간 :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이 되는 날 자정(24시)까지
 - ※ 예) 4월1일 검체채취한 경우, 4월7일 자정(24시)까지 격리
- (확진자 하선) 확진자는 격리해제 후 하선 가능(격리해제 이후라도 불요불급한 상륙은 제한)
 - * 확진자에 대한 추가 검사는 불요